

「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10월 8일

국토교통부장관

「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」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임대보증 가입기준으로 활용되는 공시가격 인정비율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달리 주택유형·가액별로 차등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주택가격을 적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, 주택가격을 보다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동일하게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일원화하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공시가격 적용비율을 140%로 일원화(안 별표 1)

3. 의견 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28일

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(민간임대정책과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나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

개정안	수정안	의견(이유)

다. 그 밖의 참고사항 등

라. 보내실 곳

- 우편 : (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, 6동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
- 팩스 : 044-201-5575

3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>) 정책자료→법령정보→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,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(044-201-3363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